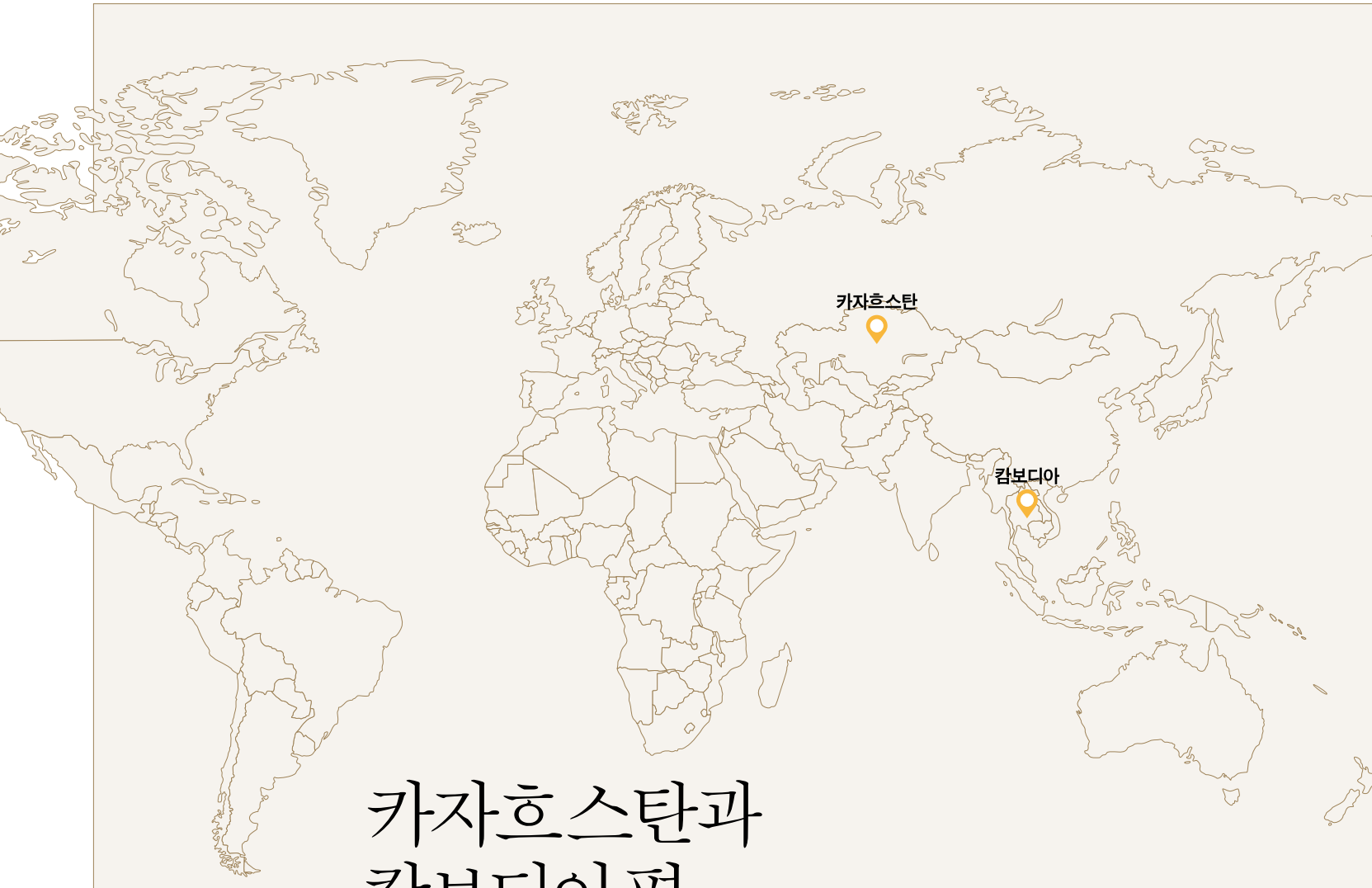

카자흐스탄과 캄보디아편

공효영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전문연구원
hykong@klri.re.kr

Asia Legal News

카자흐스탄
Kazakhstan

I. 카자흐스탄 행정절차 및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Administrative Procedure and Proceedings Code) 채택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2020년 6월 2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행정절차 및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APPC)을 재가했다.

『카자흐스탄 행정절차 및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APPC)의 기본 목표는 첫째, 행정적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통합하는 것이며, 둘째, 정부당국과 사법당국에 의한 분쟁을 조사하는 한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법률은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행정절차 편과 행정소송절차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APPC는 정부 당국의 행정적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절차와 소송절차의 새로운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와 소송절차의 새로운 원칙

비례의 원칙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는 비례성이 존재해야한다.
권리우선의 원칙	법률조항에 의심이나 모순, 모호한 점이 있으면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된다.
신뢰보호의 원칙	시민은 국가의 결정이 적법하며 일관성 있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성의 원칙	시민이 제공하는 문서는 당국이 입증하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건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청구상의 오류를 시정하며, 모호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소송 청구의 결과를 설명하며, 사건에 대한 예비 의견을 표명할 의무가 있다.

APPC를 개발하여 입법하기까지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 법의 채택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법원소송절차가 개선되고, 행정절차 간의 차이 및 모호성이 해소되었으며, 법원의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헌법적 권리가 보호되는 등 의미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II.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를 비준할 예정인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19년 12월 20일에 개최된 국가공공신뢰위원회(NCPC)의 제2차 회의에서 사형 제도의 전면 폐지를 선언하였다. NCPC는 카자흐스탄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로서 국민·정당·시민사회 대표와의 폭넓은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제안과 권고안을 제공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제는 카자흐스탄 인권변호사들이 주장해왔던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ICCPR)'의 가입절차를 개시했다.

2016년 UN 인권위원회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두 번째 정기 보고서의 결론에서 사형제 폐지와 함께 ICCPR의 비준을 권고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는 2003년부터 사형집행유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실상 법정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유예가 형사 처벌의 한 형태인 사형제를 폐지한 것은 아니며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1년 후부터는 다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 형법에서 사형 선고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금지된 전쟁 수단과 방법의 사용', '대량학살', '테러행위'를 비롯하여 15개 이상이 된다.

그렇기에 카자흐스탄의 ICCPR 가입은 UN 인권위원회 등 여러 국제 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큰 진전이며, 카자흐스탄 인권 보호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III. 평화적 집회의 조직 및 개최에 관한 법률(Law on the Procedure for Organization and Holding of Peaceful Assemblies) 채택

2020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한 해였지만 카자흐스탄에게는 입법절차과정을 다듬는 중요한 해였다. 이에 따라 여러 주요 분야의 법률들이 채택되고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2020년 6월 6일자로 시행된『평화적 집회의 조직 및 개최에 관한 법률』(Law on the Procedure for Organization and Holding of Peaceful Assemblies)의 신설이 그 한 예이다.

이 법은 시민들이 시민적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새롭게 채택된 평화적 집회에 관한 법률은 다수의 혁신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최초로 평화적 집회라는 형태에 대한 개념적 장치를 도입하였다. '피케팅', '행진', '시위', '결집', '집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기존 법률과의 차이와 모호함을 시정하고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평화적 집회의 통지 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신설로 인해 앞으로는 지방 행정당국으로부터 별도의 평화 집회 개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평화 집회를 주최하는 자는 피케팅, 집회, 결집 등의 형태로 특별 장소에서 계획된 집회에 대해 지방 행정당국에 통지하면 된다.

셋째, 이 법은 평화적인 집회를 조직하고 개최하는 특별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별'장소는 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 당국이 결정하며, 카자흐스탄 주요 도시들의 중심지 및 수도인 누루술탄, 그리고 지방 행정중심지들에 최소 3곳씩 위치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평화적인 집회 개최에 관한 법률의 신설은 인권 보호와 증진, 그리고 인권 존중에 관한 국가의 의무 실현에 있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채택된 법이 카자흐스탄의 평화적인 집회 개최의 제도적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2020년 제16회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총회에 참석한 회원기관들이 제공한 ALIN Legislative News 가운데 카자흐스탄 편 (저자: Dinara Salykova, Institute of Legislation and legal in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을 번역·편집한 것임.

캄보디아
Cambodia

I. 캄보디아 노동조합법(Trade Union Law)의 개정에 관한 법률

『캄보디아 노동조합법』은 2016년 5월 17일에 공포되고 2016년 5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의 첫 번째 개정안은 2020년 1월 3일에 공포되었고, 2020년 1월 4일부터 즉시 시행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2020년 개정 노동조합법』은 기존의 『2016년 노동조합법』의 10개 조항(제3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54조, 제55조, 제59조)을 개정한 것이다.

『2020년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노동조합법에서는 항공운송업 및 해상운송업 종사자들도 대상이 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1997년 노동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시설만이 대상이 된다.(제3조)

크메르인과 외국인의 기업 또는 시설의 노동조합 간부/행정담당자와 관련해 새롭게 개정된 조항과 폐지된 조항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제20조)

개정된 조항과 폐지된 조

	2016년 노동조합법	2020년 개정 노동조합법
크메르 국적의 간부/ 행정담당자	- 최소 18세 이상 - 거주지 주소 자진신고 - 크메르어로 최소한 읽고 쓸 수 있는 학력임을 스스로 밝혀야 함 - 경범죄 또는 중범죄 기록에 대한 자진신고	- 최소 18세 이상 - 거주지 주소 및 법적 주소 - 자진신고
외국 국적의 간부/ 행정담당자	- 최소 18세 이상 - 크메르어로 읽고 쓸 수 있어야 함 - 캄보디아에서 최소 2년 동안 일하고 있어야 함 - 경범죄 또는 중범죄 기록에 대한 자진신고 - 캄보디아 이민법에 따라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영구주소지를 둘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최소 18세 이상 - 크메르어로 읽고 쓸 수 있어야 함 - 캄보디아에서 최소 2년 동안 일하고 있어야 함 - 캄보디아 이민법에 따라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영구주소지를 둘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2020년 개정 노동조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경범죄나 중범죄 유죄판결에 대한 자진신고의 삭제이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경·중범죄로 고발당하기가 쉬운데 이는 노동조합 간부로서는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협회의 간부나 행정담당자에게도 경중범죄 자진신고 폐지가 적용된다.(제21조)

이 글은 2020년 제16회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총회에 참석한 회원기관들이 제공한 ALIN Legislative News 가운데 캄보디아 편(저자: Dr. Phalthy Hap, Royal University of Law and Economy)을 번역·편집한 것임.